

# 2025년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수정공고

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「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5. 14.

용인시장

## 1.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□ 공고일 : 2025. 5. 14.(수)

□ 신청기간 : 2025. 5. 21.(수) 9:00 ~ 5. 27.(화) 18:00

□ 사업비 : 1억 원

□ 지원내용 :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  
(최대 100만원)

※ 생애 1회, 대출잔액의 1%를 일시금으로 지급, 신청인 계좌입금

※ (예시) 대출잔액이 2억원인 경우, 1%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 지원  
대출잔액이 8천만원인 경우, 1%인 80만원 지원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,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 
별도 심사기준(신혼부부, 자녀, 전용면적,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)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

□ 지원대상 : ①~④ 모두 충족 시 지원

① (연령·거주)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 
18세~39세 청년 가구 중 '23.1.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
② (주택기준) 주택가격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
③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④ (재산기준) 3억7천만원 이하

## 2. 신청방법 등

- 신청기간 : 2025. 5. 21.(수) 9:00 ~ 5. 27.(화) 18:00
- 신청인 : 대출자·소유자 본인
- 신청방법 : 온라인(용인청년포털 청년e랑, youth.yongin.go.kr)
- 제출서류 : 붙임 참조 ※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

## 3. 지원기준

- 신청일부터 선정 시까지 지원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지원대상
  - 금융권에서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세~39세 청년 가구 중 '23.1.1.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
    - ※ 2025년 기준 1985년생~2007년생
    - ※ 생애 첫 주택 구입을 2023.1.1. 이후 용인시 소재 주택으로 구입한 청년  
구입일은 매매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유리한 날짜 적용
  - 신청일 기준 주택 ①구입자금 대출 실행, ②매매 잔금 지급, ③소유권 취득과 ④전입신고 완료자
    - ※ 신청일 기준 ①~④이 완료되어야 함(중도금 대출 불가)
    - ※ 소유권 취득일은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봄
  -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구입 자금 용도의 대출만 인정하며, 대출 용도에 주택자금, 매매 등으로 표기
    - ※ 일반, 신용대출 불가 : 신용대출로 주택구입자금 총당 불인정
    - ※ 자금 용도는 구입용도여야 하며 보전 또는 상환용도는 불가
- 지원 제외대상

### < 지원 제외대상 >
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등)
- 공공임대주택 거주(공공분양 주택공급,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)
-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-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관련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
(청년 전·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, 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)  
(예외 : 주택도시시기금(디딤돌 등) 수혜자는 본 사업 신청 가능)
-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
- 금융권 담보대출을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(거주지)가 다를 경우
- 금융권 대출 용도가 일반·신용대출인 경우
- 전국 기준(용인시 포함) 2주택 이상 소유 세대
-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중복신청 불가 및 지원 제외대상 가구 범위 : 본인, 배우자

□ 주택기준

- 용인시 소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m<sup>2</sup> 이하 주택

※ 매매(분양)계약서 기준

-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

※ 오피스텔 등 준주택 불가

- 보유주택 수 : 1가구 1주택(대출대상 주택) 소유

※ 신청자가 매입 주택의 소유자여야하며, 그 외 가구원은 무주택자일 것

※ 해당 주택소유 외에 분양권, 입주권 소유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것으로 봄

※ 무주택기준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

※ 용인시 1주택 소유자(타시에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)이면서 해당 주택의 대출을 받고 거주 및 주민등록을 한 경우

□ 소득기준 :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(단위:원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중위소득 180%	4,305,623	7,078,784	9,045,635	10,975,991	12,794,746	14,516,649

※ 청년가구(본인, 배우자, 자녀)는 세대 분리된 경우도 동일 가구로 간주

※ 기준중위소득 : (2025년 기준)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

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

□ 재산기준 : 총재산가액 3억 7천만원 이하

- 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 가액 - 부채

※ (일반재산) 건축물, 주택, 토지, 임차보증금, 선박, 항공기, 회원권 등

(부채) 해당 주택구입 용도 및 배우자 거주지 임차보증금 용도의 주택 관련 부채만 인정

※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에 의함

#### 4. 지원내용 및 방법

□ 지원액 : 주택구입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 내 이자 지원(최대 100만원)

□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□ 선정일 : 2025. 7. 30.(예정) (개별 문자 통보)

□ 지급일 :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

※ 선정 및 지급시기는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※ 별도 심사기준(배점표)에 의한 미선정자는 선정조건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선정자로 향후 대상자 추가 선정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재신청절차 없이 선정대상자로 포함 예정

## 5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
-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허위,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
- 지원 요건 미충족, 지원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
- 신청일 현재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선정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함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사업부서 해석에 따름

## 6. 문의처

-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(☎ 031-6193-2761)

## 【붙임 1】 제출서류

	제출서류	유의사항
공 동 서 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매매(분양)계약서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인시 주택 소재지, 면적, 가격, 매도인, 매수인, 계약체결일, 잔금지급일 등 확인</li> <li>- 신청기간 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거나,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, '<b>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</b>' 추가 제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※(발급)무인민원발급기, 대법원인터넷등기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기간 내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, '<b>선정일(25.7.30.)까지 제출(미제출 시 지급 제외)</b>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확인 서류 ※(발급)대출실행 해당은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적사항, 대출용도(주택자금, 매매 등) 및 대출금액(대출잔액), 대출기간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</li> <li>- 금융권 직인 날인 필수</li> <li>- 위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(내역)확인서 등 추가 제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취득세 감면 확인서 ※(발급)처인·기흥·수지구청 세무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정사유에 '<b>생애최초 주택 취득</b>' 표기된 확인서</li> <li>- 신청인 정보, 취득 주택 등 전체 표기</li> <li>※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</li> </ul>
공 동 서 류	<p>(취득세 감면 확인서가 <b>'없는'</b> 경우 해당서류 제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※(발급)행정복지센터</li> </ul>	<p><b>1. 신청자(=주택소유자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세연도 : 1996년(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)~2025년 현재</li> <li>· 세목 :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</li> <li>· 발급서류 종류(①~③ 모두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관내(용인시) 과세증명서</li> <li>② 경기도(용인시 외) 미과세증명서</li> <li>③ 전국(경기도 외) 미과세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※ 예외적으로 주택소유자더라도 재산세(주택)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</li> </ul> <p>&lt;공동소유의 여부에 따라 배우자는 2-1 또는 2-2 둘 중 하나 제출&gt;</p> <p><b>2-1. 배우자(공동소유 아닌 무주택인 경우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세연도 : 2024년~2025년 현재</li> <li>· 세목 :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</li> <li>· 발급서류 종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국 미과세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※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<b>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(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)</b></li> </ul> <p><b>2-2. 배우자(공동소유인 경우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세연도 : 2024년~2025년 현재</li> <li>· 세목 : 재산세(주택), 취득세(부동산)</li> <li>· 발급서류 종류(①~③ 모두 발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관내(용인시) 과세증명서</li> <li>② 경기도(용인시 외) 미과세증명서</li> <li>③ 전국(경기도 외) 미과세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※ 예외적으로 주택 공동소유자더라도 재산세(주택) 과세 이력이 없는 경우 전국 미과세 증명서 발급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※(발급)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청인의 통장 사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정 시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</li> </ul>

	제출서류	유의사항
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배우자, 자녀) 개인정보 동의서 ※공고문 내의 [붙임 4] 서식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기타서류에 첨부</li> </ul>	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혼인한 경우) 혼인관계증명서(일반) ※(발급)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</li> </ul>	-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배우자) 임대차계약서 사본, 금융거래확인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표 등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서류 제출</li> <li>- 거주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</li> </ul>
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은 담당자가 확인함

#### □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모든 발급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.
- 접수기관은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.
  - 서류 보완요청 후 10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취소
  -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





## 【붙임 4】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배우자, 자녀)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용인시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

수집·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지급계좌, 대출현황(대출기관, 대출잔액증명 서류), 소유주택현황,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,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국세·지방세, 토지, 건물,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출입국, 병무, 보훈급여, 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거부권리 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용인시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, 제공 목적 및 항목, 보유·이용기간

제공받는 자	제공목적	제공항목	보유·이용기간
국토교통부장관	주택소유여부 검색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	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·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구(사회보장정보원)	주택, 소득 및 자산 검색 유사사업 중복수급 여부 조회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	
	임대주택 거주여부 조회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	
	주택, 소득 및 자산 검색	성명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	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거부권리 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활용 동의서

보유기관/이용기관 : 행정안전부/용인시  이용목적 :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처리

보유·이용기간 :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 행정정보 공동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: 성명, 주소, 고유식별번호

공동이용 행정정보 : 주민등록표등·초본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, 건축물대장, 공공임대주택정보

관련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, 전자정부법 제36조,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

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
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
 만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성명	생년월일	관계	서명	성명	생년월일	관계	서명
		배우자	(서명 또는 인)			자녀	(서명 또는 인)
		자녀	(서명 또는 인)			자녀	(서명 또는 인)

※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날인하고,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